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279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

복지문화 위원회
전 문 위 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4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
- 발의자: 박왕규 의원 외 6인
- 발의일자: 2021. 3. 30.
- 회부일자: 2021. 4. 9.
- 검토기간: 2021. 4. 9. ~ 2021. 4. 19.

2. 제정이유

달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관광객 유치 지원 등(안 제4조)
- 라. 관광업무의 위탁 등, 지도·감독(안 제5조~안 제6조)
- 마. 관광진흥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(안 제7조~안 제9조)
- 바. 위원의 임기, 위촉 해제, 위원장의 직무 등(안 제10조~안 제12조)
- 사. 회의, 의견의 청취 등(안 제13조~안 제14조)
- 아. 포상(안 제15조)

4. 검토 의견

- 조례안은 달서구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달서구만의 관광산업의 육성·지원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 제정 취지 및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- 그러나 조례 공포 후, 집행부의 내실 있는 조례 시행과 상응하는 관광 정책 방향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 조문들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의 추가 논의가 필요.

1. 조문 내용 보완 필요

관광진흥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광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제1호)을 명시하였으나, 본 조례안에는 동 관광 진흥 계획과 관련된 규정이 없음. 이는 조례 규정(입안) 방식 상 부적절함¹⁾.

2. 안 제5조(관광업무 (민간)위탁)에 대해

- 안 제5조제1항에서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(민간)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“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” 등 4가지 사업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.
 1.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
 2. 국내·외 박람회(전시회) 참가 운영 및 관광객 유치설명회
 3.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
 4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1) 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 조례의 사업 시행 계획을 규정할 경우, 여타 조항에서 동 해당 시행 계획 내용을 별도로 명시함이 일반적인 조례 규정 방식이라 하겠음.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」 제5조(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)과 제8조(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)과 제8조(위원회의 기능)

- 수탁자로 선정되면 그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²⁾하에 수탁 사업을 하게 되는데, “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”을(집행부가 직접 하지 않고)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.
- 한편으로 대구 타 자치구가 시행하는 위탁 사업 내용(아래 표) 특히 ‘문화관광해설사’ 운영 또는 ‘관광안내센터(소)’ 설치 운영 등은 달서구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지 등에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□ 기타 : 집행부 <문화관광해설사> 관련 조문 신설 요구(별첨)에 대해

- 원안에 대해 수정할 경우, 그 수정하려는 내용이 간단하지 않으면 일정한 형식 갖추고 서면(절차 준수)으로 제출된 <수정안(수정동의)>이 있어야 함³⁾.
 - 일정 형식과 서면에 의한 수정안 제출 절차⁴⁾가 배제되면, 의회(및 위원회) 심의과정에서 다른 의원에 의한 또 다른 조문 신설 요구(예 : <관광안내소 설치(대구시 남구·중구)>)도 심의 안건이 되어 의회(위원회) 안건 심의 과정에 문제 발생.

2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2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3) 의원이 의안에 대한 수정안(수정동의)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 필요. 일정한 형식에 의한 작성, 명확하게 할 필요성 등으로 서면으로 발의함. 그런데 위원회의 경우, 수정하려는 내용이 간단한 내용(자구 정리 등)이면 구두로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도 있을 것임. 다만, 수정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·발의하도록 해야 할 것임 (최민수 저 《지방의원 운영》 717쪽)

수정안 안건 제명(예시)

- ◇ ○○○안에 대한 수정안(위원회에서는 “○○○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”)
- ◇ ○○○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(단체장의 수정안 제출 시) (같은 책 716쪽)

- 4)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2조(수정동의)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.
-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.
-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

- 한편, 그렇게 형식을 갖춰 제출된 수정안(또는 수정동의 건)에 대해서도 의회(위원회)는 심의과정에서 다시 (원안과 함께) 수정을 할 수도 있음.
 - 일례로 동 <문화관광해설사>규정을 집행부 의견과 달리 안 제5조에 담아 민간에게 위탁(예 : 대구시 남구)할 수도 있으며, 별도로 (가칭) 「달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⁵⁾할 수도 있음

5) 사례 : 대구시 북구 경우 <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>와 함께 <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>를 운용 중이며, 현재 <○○○시 문화관광해설사 조례>를 별도로 제정 운용중인 지자체는 현재 98곳에 이룸 (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)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안」 - 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21. 3. 30.

2. 발의자: 박왕규(대표발의), 홍복조, 안대국, 이영빈, 박정환, 정창근, 김화덕

3. 제안이유: 달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관광객 유치 지원 등(안 제4조)
- 라. 관광업무의 위탁 등, 지도·감독(안 제5조~안 제6조)
- 마. 관광진흥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(안 제7조~안 제9조)
- 바. 위원의 임기, 위촉 해제, 위원장의 직무 등(안 제10조~안 제12조)
- 사. 회의, 의견의 청취 등(안 제13조~안 제14조)
- 아. 포상(안 제15조)

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- 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입법예고: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

6. 검토의견

- 달서구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인프라 개선 등 관광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광사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므로 조례제정 취지에 동의 함

- 다만, 현재 활동 중인 달서문화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제7조(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), 제8조(해설사의 활동내용), 제9조(활동비 지급 등)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- 또한, 제정안 제10조(위원의 임기)의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구성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7. 수정내용

조례안	수정(안)	사 유
제1조 ~ 제6조 (생략) <신 설>	제1조 ~ 제6조(조례안과 같음) 제7조(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) 구청장은 중요 관광지 및 축제 기간, 문화행사 기간 등에 문화관광해설사(이하 “해설사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	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
<신 설>	제8조(해설사의 활동내용)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호와 같다. 1. 역사·문화·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.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.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	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내용에 관한 규정 마련
<신 설>	제9조(활동비 지급 등)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른 활동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. ③ 해설사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	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급 및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 마련

조례안	수정(안)	사유
<p>제7조 ~ 제9조(생략)</p> <p>제10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 ~ 제12조(조례안과 같음)</p> <p><u>제13조 (의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임기 내 위촉 해제 사유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함.</p>
<p>제11조 ~ 제16조(생략)</p> <p>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14조 ~ 제19조(조례안과 같음)</p> <p>부 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이 조례 시행 전 선발된 달서문화해설사는 이 조례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. 	